



**크와미 라울**  
**(Kwame Raoul)**  
법무장관

# 법무장관실 일리노이주

115 S. LASALLE STREET · CHICAGO, IL 60603

WWW.ILLINOISATTORNEYGENERAL.GOV

**민권 핫라인**  
1-877-581-3692

## 귀하의 권리를 알아두세요

이민에 관한 연방 행정 조치에 따라 법무장관실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위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. 서류 미비자를 포함하여 일리노이주에 거주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헌법상의 권리를 가집니다. 다음 정보는 귀하가 법 집행기관과 상호작용할 때 본인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.

### 귀하의 권리

경찰관 또는 이민국 직원과 대면하는 경우:

- 귀하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,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영주권 카드, 취업 허가 카드 또는 귀화 증명서와 같은 유효한 이민 서류가 있는 경우, 이민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- 경찰관이나 직원은 무기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, 귀하의 신체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.

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:

-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자택을 방문한 경우,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.
- 경찰관 또는 이민국 직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, 소속 기관, 특히 이민국 직원인지, ICE에서 나왔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.
- 경찰관 또는 직원에게 방문 목적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.
- 경찰관 또는 직원과 언어 문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,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경찰관이나 직원이 영장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, 집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법원에서 발급되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인 경우, 경찰관은 집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. 문서에 판사의 서명이 없는 경우, 집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: 'You are not allowed to enter.' (출입을 불허합니다)
- 경찰관이나 직원이 집안으로 강제 진입하는 경우, 저항하지 마세요.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: 'You are not allowed to enter.' (출입을 불허합니다) 'I do not consent to a search.' (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) 'I wish to remain silent.' (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) 'I wish to speak with an attorney as soon as possible.' (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)

체포된 경우:

- 체포에 저항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.
- 귀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단,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말을 할 필요도, 질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.
- 귀하는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귀하가 문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, 그 누구도 귀하에게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서명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.

### 반드시 알아둘 사항

- 유효한 신분증을 늘 지참하고 다니세요. 이민 서류가 있는 경우, 항상 유효한 이민 서류와 취업 허가서를 지참하세요.
- A 번호를 외워두세요.
- 허위 또는 사기성 문서를 소지하지 말고,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에게 허위 또는 사기성 문서를 제시하지 마세요.
-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과 마주할 경우,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껴 불만을 제기하고자 할 때를 대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.

### 불법 이민 서비스 제공기관 주의

- 이민 서비스 제공기관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법률 서비스 및 이민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상세 정보는 <https://illinoisattorneygeneral.gov/rights-of-the-people/civil-rights/immigration/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추가 자료

국립이민정의센터(National Immigrant Justice Center):  
<https://immigrantjustice.org/know-your-rights>

미국시민자유연합(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):  
<https://www.aclu.org/know-your-rights/immigrants-rights>

법무부 민권국(Attorney General's Civil Rights Bureau)은 일리노이 주민들의 시민권을 보호합니다. 민권국은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시행하고, 민권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,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합니다. 또한 주택, 공공시설, 고용 및 금융 문제에서 차별 습관과 관행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.

법무장관실은 문의를 위해 연락한 분의 이민 신분 상태나 시민권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.

법무장관실은 개인이 차별이나 괴롭힘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권 핫라인(1-877-581-3692)으로 연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은 7-1-1 중계 서비스를 통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